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015
----------	------

2023년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4일 이효원 의원(찬성42명)
2.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효원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경우 대규모의 콘서트와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적관람석의 설치 운영의 장소가 공연장 등만 포함하고 있어 시립체육시설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약자들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

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을 공연장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
립체육시설로 확대하여 시립체육시설에도 최적관람석 설치되도록
명시함.

2. 주요내용

-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할 ‘공연장’ 을 ‘공연장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로 확대함(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 가 .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미첨부2호 사유서)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라. 입법예고 : 2023.08.24.~ 2023.8.28.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에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K-팝 공연등 대규모 문화행사를 올림픽주경기장 등 시립체육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2)에는 “공연장 등”을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연장 등”의 정의에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시립체육시설까지 최적관람석을 확대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안된 것임.
- 「문화기본법」 제4조³⁾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와 문화생활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가. 개정 안의 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4) 및 동법 시행령 제3조5)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2.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차. 운동시설 중 (1)체육관, (2)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해당됨 .
- 하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2호6)에는 장애인등을 위한 최적

4)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5)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4, 2022.12.30>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관람석에 “공연장 등”으로 사용되는 시립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u>공연장</u>,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p> <p>3.·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u>, ----- -----.</p> <p>3.·4. (현행과 같음)</p>

나. 관련 법령 검토결과

- 개정 조례 관련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7)에 의하면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위한 최적관람석 대상시설을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7)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하며
- 본 개정안의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의 정의란 법령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나 시립체육시설중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의미한다 하겠음.
-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은 건축물대장 상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되어 있으며 상위법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은 관람석·열람석 설치가 의무사항이고,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은 관람석·열람석 설치가 권장사항임.
-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권장사항이더라도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님.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3. 가.(14)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경우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을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휠체어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의 설치 장소에 대하여는 ‘출입구 및 피난 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로만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람 편의 증진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사회특성(문화 및 여가생활) 실태를 보면, 장애인의 8.8%(‘17년 4.5%)는 지난 한 달 동안 전혀 외출하지 않았으며,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2.9점(5점만점, ‘17년 3.0점)으로 감소함. 문화·여가활동의 만족 수준은 43%로 여전히 장애인의 과반(57%)은 불만족하는 수준이었음.

- 또한, 실태조사 결과 관람석·열람석의 핵심 항목 중 가장 높은 설치율은 출입구·피난통로의 접근성(89.8%)이며 가장 낮은 설치율은 열람석 높이·휠체어 발판공간(85.7%)으로 평균 설치율은 87.2%로 나타남.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를 통해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립체육시설을 확인한 결과 시립체육시설로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외 37개 시설이 있으며 이중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설로는 올림픽주경기장 외 19개 시설로 최적관람석은 총 510석이 설치되어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최적관람석 제도를 의무화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다. 부서의견 : 수정가결

- 이와 관련해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조례 제2조(정의) 제1호 “공연장 등”이란 정의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을 말한다”로 수정 의견 제출하였음. 이는 동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끝으로 별도 명시가 적절하다는 수정의견 제시함.

3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관람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단, 최적관람석이 정의하고 있는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대한 설치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등이 여가와 문화생활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체육시설 등에서 시설과 설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는 최적 관람석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붙임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현황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공연장으 로 운영여부	좌석수(석)	최적관람석 (석)	면적(㎡)
잠실종합 운동장 (10개)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운영	65,599	105	111,792
	육상연습장 (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미운영	-	-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운영	11,044	30	26,095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미운영	-	-	22,479
	제1수영장	수영		미운영	-	-	6,021
	제2수영장	수영		미운영	-	-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미운영	-	-	
	야구장	야구		미운영	24,339	40	45,312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행사		미운영	-	-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미운영	-	-	
서울 월드컵 경기장 (6개)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운영	66,704	288	166,627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위명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 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 돔구장 (6개)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운영	16,744	40	83,623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목동 운동장 (4개)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목1동 914)	미운영	15,511	8	22,124
	야구장	야구		미운영	10,432	24	19,114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운영	5,000	7	14,700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공연장으로 운영여부	좌석수(석)	최적관람석 (석)	면적(m ²)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미운영	-	-	1,954
효창 운동장 (1개)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효창동 3)	미운영	15,194	-	28,524
장충 체육관 (4개)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운영	4,507	40	12,390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뚝섬승마 훈련원 (1개)	승마훈련원	승마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8-15 (성수동1가 685-6)	미운영	-	폐지	-
구의 야구공원 (1개)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위커향로 57-30 (구의동 164-5)	미운영	-	-	17,330
신월 야구공원 (1개)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 (신월동 149-20)	미운영	-	-	18,947
창동문화 체육센터 (3개)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132 (창동 1-6))	미운영	-	-	14,247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산악문화 체험센터 (1개)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 (상암동 481-231)	미운영	-	-	2,1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p>(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p>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p>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낫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p>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p>

	<p>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p>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p>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p>(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p> <p>(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p>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p>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p>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10) 점자블록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p>(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p>

	<p>내장차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삭제<2007.2.12></p> <p>(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 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p>(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장애인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p>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p>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p>(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p> <p>(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p>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p>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욕실	사위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전시장, 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료 시설	병원·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 연구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1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이효원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정인,
윤종복,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전병주,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경우 대규모의 콘서트와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적관람석의 설치 운영의 장소가 공연장 등만 포함하고 있어 시립체육시설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약자들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을 공연장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로 확대하여 시립체육시설에도 최적관람석 설치되도록 명시함.

2. 주요내용

- 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할 ‘공연장’ 을 ‘공연장과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 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연장”을 “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u>공연장</u>,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p> <p>3.·4.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공연장, 공연장으로 운영되는 시립체육시설,</u> ----- -----.</p> <p>3.·4. (현행과 같음)</p>